

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-50블록 | 사전청약(노부모부양) 자격확인서류

■ 서류접수 일정 및 장소

구분	서류제출 기간	서류제출 장소
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	2022년 04월 20일(수) ~ 25일(월) 현장접수처 방문 (10:00~17:00)	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-50블록 현장 접수처 (주소 :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00-4, CL타워 207호)

■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확인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구비서류	○		무주택서약서	본인	•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·입주자모집공고일을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·비속	• 해외에 체류중(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• 만 30세 이상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• 만 30세 미만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
당첨자 추가 제출서류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직계비속		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)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용도·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.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. 접수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- ※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, 사전공급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 및 관계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